

부산지방법원 2023. 10. 11 선고 2023나43662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재판경과

부산지방법원 2023. 10. 11 선고 2023나43662 판결

부산지방법원 2023. 1. 31 선고 2022가소504385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국제, 담당변호사 홍달파

피고, 피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재유, 담당변호사 정은영

변론종결 2023. 9. 6.

판결선고 2023. 10. 11.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23. 1. 31. 선고 2022가소504385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1,430,87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 원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들을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5쪽 10줄 ‘이 사건 약정서 제3조’를 ‘이 사건 약정서 제1조’로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유현영, 판사 서호원, 판사 이효신